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210-430	(전화 : 731-6321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기안</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div>	
시행일자	86.9.		
보부시 조장	김민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김민 김민	문서 통제
기 관	산업경제국 농축과장		
기안책임자	박주호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병의	시 장
제 목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의 규정		
제 1 안 ( 내부결재 )	9/20 483		
제 목	같은것		
1.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승인을 함에 있어 이의 합리적인 조정심의회와 농지의 보전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 를 운영하고자 함이다.			
○ 근거 : 농수산부 훈령 제611호 농지전용억제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제6조			
첨부 가.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 1부.			
나. 근거법규 1부.			
다. 농수산부심의위원회 규정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시보계제의뢰

1. 별첨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시보계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시보계제 구분 : 예 규.

나. 시 보 계 제 명 :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첨부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 1 조 ( 목적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승인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산업경제국장이 대행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농축과장으로 한다.

제 3 조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지전용 억제지침제정을 위한 준칙( 농수산부 훈령 제611호 )

제4조에 정한 최소화 기준 초과사항으로서 시장의 인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농지전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사항

2. 서울특별시 농지보전시책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4 조 ( 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2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책임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 5 조 ( 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 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農地轉用許可審查細部規程

1985. 7. 26.

農 水 産 部

## 農地轉用抑制指針制定을 爲한 準則

第 1 條 (目的) 이 指針은 食糧生産基盤인 農地의 絕對面積이 繼續減少됨에 따라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의 趣旨를 받들어 農耕地의 他目的 專用을 抑制하여 可及的 他目的 施設은 非農地를 活用토록 함으로써 食糧自給率 向上을 爲한 農耕地의 必要面積을 確保함에 있다.

第 2 條 (指針制定 形式) 農地轉用 抑制指針은 市·道 條例로서 制定施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다른 形式으로 作成하여 一線 行政機關에 示達함으로써 農地保全 業務處理의 指針으로 活用케 할 수 있다.

第 3 條 (農地保全施策 推進上 原則) 農地轉用 抑制指針을 制定함에 있어 아래의 基本原則을 闡明한다.

1. 農業生産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他施設은 農地에 設置함을 抑制
2. 絕對農地의 他目的 轉用과 農地만을 使用하여 他目的施設 設置를 爲한 農地轉用은 不許함을 原則
3. 農地轉用이 不可避한 境遇에는 그 敷地面積은 轉用目的 實現을 爲한 最小限의 面積으로 하고 編入農地도 可及的 最小化 함.
4. 他施設 設置로 隣近農地의 保全과 營農에 顯著히 支障을 超來하는 境遇에는 비록 編入農地가 最小化 되어 있을 境遇에도 不許할 수 있음.

第 4 條 (農地專用許可面積 最小化等 基準) ①農地를 使用하여 他目的施設 設置가 不可避한 境遇에는 總施設 敷地面積은 關聯法 規定 또는 施設性格에 따라 決定하고 그 敷地面積의 農地編入 許容比率은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 第6條第 1 項第 2 號의 最少面積 比率은 아래 基準을 適用한다. 다만, 編入農地面積이 1,000 m<sup>2</sup> 未滿인 境遇와 既存施設을 擴張하는 境遇로서 非農地 使用이 不可하여 農地編入 許容이 不可避한 境遇는 例外로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最少面積 比率 超過할 境遇에는 第 6 條에 依據 處理하여야 한다.

1. 公用(公共) 施設以外的 施設로 農地轉用(農地轉用許可對象施設) 가. 農地編入 許容上限 (共通)

轉用許可對象施設	編入農地比率	備 考
○ 새마을工場, 農水產物 處理加工施設을 包含한 工場施設	30%未滿	○ 絶對農地轉用은 不許하되 不可避한 境遇 5% 以下일 境遇에만 許容 (農家住宅 및 農業用 施設 除外)
○ 孤兒院, 養老院, 病院等 公益施設 (社會福祉 施設)	30%未滿	
○ 國民住宅等 住居施設 (農家住宅은 除外)	30%未滿	
○ 觀光施設用地 (民間施設), 但,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施行 觀光施設은 30%未滿	20%未滿	

專用許可對象施設	編入農地比率	備 考
○ 鑛業施設 및 그 附帶施設	30 %未滿	
○ 非農家用 農水產物 倉庫用地	50 %未滿	
○ 漁具類 養食施設 및 乾燥施設	70 %未滿	
○ 注油所, 休憩所, 버스停留場等 道路利用 關係施設	50 %未滿	
○ 副業團地施設	50 %未滿	
○ 電氣, 電話等 產業機關과 政府 投資機關의 施設	30 %未滿	
○ 私道法에 依한 道路	50 %未滿	
○ 農家住宅 및 農業用施設	100 %未滿	
○ 마을會館等 共同利用施設	50 %未滿	
○ 其他 許可 對象施設	20 %未滿	

\* 抑制指針 制定이 必要한 境遇 市·道 與件 勘案하여 其他 許可對象施設을 細紛하여 規定할 수 있음. (但, 上記 農地 包含費用을 超過할 수 없음)

나. 用途地域別 追加許可範圍

- 1) “가” 目的 農地編入 許容比率에 20 % 追加可能 用途地域
  - 邑級以上 都市計劃區域의 自然綠地地域
  - 產業基地 開發區域, 觀光事業法上의 觀光地 및 各種 工業

團地關係法에 依據 指定된 工業團地의 留保地 또는 綠地  
地域

○ 國土利用管理法上 開發促進地域

2) “가” 目的 農地編入許容 比率에 10% 追加可能 用途地域

○ 邑級以上 都市計劃區域의 生産綠地地域

○ 面級 都市計劃區域의 自然綠地地域 (生産綠地地域은 除外)

○ 國土利用管理法上 聚落地域 (開發計劃樹立된 聚落地域의 綠地地區 包含) 및 山林保全地域

2. 舍用·公共用施設로 農地轉用 (法 第 5 條의 農地轉用 協議·同議·承認 對象施設)

轉 用 對 象 施 設	編入農地 比 率	備 考
○ 國防·軍事施設 (絕對農地)	10%未滿	
○ 學校施設	30%未滿	
○ 公共住宅建設用地	50%未滿	
○ 政府計劃에 依據 指定하는 工業團地	50%未滿	
○ 새마을事業 및 聚落構造 改善事業地	50%未滿	
○ 豫備軍 訓練場	30%未滿	
○ 官公署等 共用·廳舍施設	30%未滿	
○ 觀光施設用地 (國家, 地方自治團體 施行)	30%未滿	

專用對象施設	編入農地比率	備考
○ 其他 共用・公共用施設	30 %未滿	
○ 道路, 鐵道, 空港, 港灣, 國土保存施設, 땀水沒地等, 淨水場, 下水處理場, 쓰레기處理場, 糞尿 및 産業廢棄物 處理施設	例外로 함.	

※ 抑制指針 制定이 必要한 境遇 市·道與件을 勘案 其他施設을 細紛 規定할 수 있음. (但, 上記 農地包含比率을 超過할 수 없음)

② 絶對農地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條에 依한 指定·告示된 農地를 말하되, 다만 公共投資에 依하여 造成된 農地·農業 基盤이 整備된 農地 또는 集團化된 農地는 絶對農地로 指定·告示되 지 아니하였을지라도 絶對農地에 準하여 處理한다.

③ 第1項의 農地編入 許容基準을 特定地域 (國家計劃等에 따른 特別 地域 指定等의 事由)에 對하여 緩和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第1項의 許容基準에 一定比率의 追加 農地編入을 許容할 수 있는 地域을 設定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許容基準 範圍內일지라도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第6條第1項의 審査基準上 最小化 面積以 外的 다른 審査基準을 반드시 適用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第 5 條 ( 隣近農地の 蠶食要因의 事前防止等 ) ①轉用面積施設이 集團農地의 가운데 있거나, 또는 集團化된 農地에 隣接하여 設置함은 不許하여 農地蠶食要因 또는 隣近農地의 營農障礙要因을 事前에 防止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事由가 있어 集團農地에 隣接하여 他施設 設置기 不可避한 境遇에는 道路, 堤防, 溝渠, 河川等 集團農地와 分離할 수 있는 地形地物을 警戒로 하여 許容하여야 한다.

②集團農地等과 距離를 두고 農地에 他施設物을 設置코자 할 때에도 隣近農地의 營農에 支障을 招來할 수 있는 公害發生與否와 農地改良施設 毀損與否 等を 綿密히 檢討한 後 이에 對한 防止計劃과 그 事後管理計劃의 妥當性을 檢討하여 農地轉用 許可與否를 決定한다.

● 第 6 條 ( 審議會等의 構成 및 活用 ) 市·道知事は 合理的인 農地保全 施策 推進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 農地轉用調整審議會를 構成하여 關係部署間 關聯事項을 檢討하고, 아래 事項을 審議에 附하여 處理할 수 있다.

가. 第 4 條의 最小化基準 超過事項으로서 市·道知事が 立地 與件等을 勘案하여 不可避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境遇

나. 第 4 條의 最小基準 該當事項일지라도 一定面積以上의 農地가 編入된 境遇

다. 市·道別 農地保全施策 推進方向 設定에 關한 事項

附 則

本 指針의 效果的인 施行을 爲하여 市 道知事는 別途 條例 또는 指針을 制定 施行함을 原則으로 하되, 別途 指針等 制定이 不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本 準則을 그대로 適用 施行할 수 있다.

# “농수산부 심의 위원회 규정”

445

##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1982. 8. 19) (농수산부훈령 제 532호)

제 1 조(목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5 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승인 및 허가를 함에 있어 이의 합리적인 조정·심의와 농지의 보전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지전용 조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수산부 제 1 차관보로 한다.

② 위원은 농수산부외 농산국장, 농지국장, 특작국장 및 축산국장과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기금운용·관리담당이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담당이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수산부 농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농수산부 지정과장으로 간사 1 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 3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절대농지 3 만제곱미터이상 및 상대농지 10 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전용 협의·동의·승인 및 허가
2.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규정 및 부과금액 개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 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책임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회 대리출석)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불가피

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리출석할 수 있다.

1. 농산국장의 경우는 전작과장
2. 농지국장의 경우는 지정과장
3. 특작국장의 경우는 특작과장
4. 축산국장의 경우는 낙농과장
5. 농업진흥공사 이사의 경우는 사업 1 부장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의 경우는 기획실장

제 6 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